

(재)대전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2조
(경영공시) 1항의 7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기 관 명] 대전문화재단

[제 목]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참석자 폭행사건에 관한 사항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신분상조치] 정직 3개월 1명

[지 적 내 용] 처분요구서 참고

[기 관 명] 대전문화재단

[제 목] ‘예술가의 집’ 명칭변경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신분상조치] 정직 3개월 1명 / 감봉 2개월 1명

[지 적 내 용] 처분요구서 참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대전문화재단

[제 목]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참석자 폭행사건에 관한 사항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신분상조치] 중징계 1명

[지 적 내 용]

1. 현 황

○ 혐의자 현황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고
대전문화재단 문화기획실	팀 장	0 0 0	

2. 위법 · 부당 내용

○ 대전문화재단 직원 4명은 2016. 5. 19부터 5. 21까지 제주 라마다함덕호텔 8층에서 개최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및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음.

행사 2일째인 2016. 5. 20에는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및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는 만찬행사가 개최되었음.

이후, 공식행사를 마친 뒤 직원 4명은 제주시내 모 횃집으로 자리를 옮겨 21시경부터 2차 술자리(회 안주와 소주 5병 정도)를 갖고 22시 40분경 숙소로 돌아 왔으나,

위 혐의자가 △△△에게 한 잔 더하자고 권유를 하여 22시 50분부터 숙소인 라마다함덕호텔 앞 호프집에서 △△△와 3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음.

이 술자리에서 △△△가 혐의자에게 ‘팀장으로서 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느냐’, ‘실장자리에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냐’, ‘요즘 재단 관련 부정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난 위 혐의자는 △△△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탁자를 치고 일어서면서 고성을 지르며 △△△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음. (△△△의 진술에 의함)

같은 장소에는 타 3개 시·도 문화재단 직원들이 뒤풀이를 하고 있었으며 위 광경을 목격한 타 시·도 문화재단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고 △△△를 숙소로 안내해 주었음.

행사 3일째인 2016. 5. 21.에는 제주문화투어가 있었으나, △△△는 일정 관계로 10시 항공편으로 대전으로 돌아왔고 XXX직원과 혐의자는 투어에 참석하지 않았고 담당자만 참석한 후 15시 30분경에 3명이 공항 근처 해변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21시 5분 항공편으로 대전으로 돌아 왔음.

- 대전문화재단 직원은 「직원복무규정」 제4조(준수사항) 및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포상 및 징계내규」 제9조(징계양정기준)[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금지, 친절 공정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집단행위금지를 준수하여야 함.

- 따라서 위 행사에는 14개 시·도 문화재단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기관과 함께하는 행사이니 만큼 직장 상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공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로 성실히 행사에 임하여야 했음.

그런데도 위 혐의자는 △△△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하여 타 시도 문화재단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사실이 있음.

3. 조치할 사항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위와 같이 대전시 산하 출연기관의 직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다하지 못하고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OOOO팀장 OOO을 중징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대전문화재단

[제 목] ‘예술가의 집’ 명칭변경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신분상조치]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지 적 내 용]

1. 현 황

○ ‘예술가의 집’ 명칭변경 설문조사 현황

기 간	대 상	내 용	주관기관	용역업체	결 과	비고
2015. 7. 1 ~ 7. 31	시민 1,000명이상	예술가의 집 명칭 변경필요여부	대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	명칭변경 불필요	

2. 위법·부당 내용

-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시 문화예술과의 “대전예술가의 집” 명칭 시민의견 수렴 협조 {시 문화예술과-5641(2015. 6. 16)호} 공문에 따라 위와 같이 2015. 7. 1부터 2015. 7. 31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시 문화예술과에 제출 하였음.

[설문조사결과]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전문패널조사	시 홈페이지	재단홈페이지
총 계	1,802 (100%)	1,006 (55.8%)	153 (8.5%)	643 (35.7%)
변경 찬성	862 (47.8%)	567 (31.4%)	45 (2.5%)	250 (13.9%)
변경 반대	940 (52.2%)	439 (24.4%)	108 (6.0%)	393 (21.8%)

- 대전문화재단 임원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제1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대전문화재단 직원은 「직원복무규정」 제4조(준수사항) 및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포상 및 징계내규」 제9조(징계양정기준)[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금지, 친절 공정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집단행위금지를 준수하여야 함.

- 따라서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위 “예술가의 집 명칭변경 설문조사” 를 실시하면서 공정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했어야 했어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전광역시와 대전문화재단 행정의 대 시민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

가. 특정의견으로 설문에 답하도록 유도

- 대전문화재단 000000팀장 000(설문조사 당시 XXXX팀장)은 설문조사 계획 당시부터 예술가의 집 명칭이 변경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직원들에게 피력하였고,

2015. 7. 1. 설문조사 담당자에게 명칭변경 반대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담당자는 2015. 7. 1.(17:50)에 네이트온 메시지를 이용하여 대전문화재단 직원 33명에게 명칭변경 반대의견으로 설문참여 및 중복참여를 유도하는 메시지1)를 송부하여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음.

1) 메시지 내용(언론 ‘명칭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되었을 때 재단에 발생할 수많은 변화를 고려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중복참여는 불가하지만 중복체크를 캐시로 합니다.(따라서 브라우저의 캐시 파일을 삭제하시면 중복참여가 가능하다는 팁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000 팀장은 본인이 지휘자로 있는 □□□□□□□□들에게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예술가의 집 명칭변경 설문조사에 명칭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는 등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대전문화재단 직원복무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대전광역시 및 대전문화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

- XXXX팀장 △△△(설문조사 당시 000000팀장)는 2015. 7. 2. 본인의 페이스북(친구 3,000여명)을 통해 ‘예술가의 집’ 이란 건물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의 글을 올려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함.

나. 불공정한 설문조사 진행사실을 알고도 묵인

- 대전문화재단 ◇◇◇은 설문조사 진행 중인 2015. 7월 중순 경 설문조사 담당자가 재단 직원들에게 명칭변경 반대의견으로 설문참여 및 중복참여 메시지를 보낸 것을 재단 내 모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확인하고도, 설문조사 공정성에 대한 검토, 설문조사 중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위 사항을 보고한 팀장에게 입단속을 지시하고 묵인하는 등 재단 정관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단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3. 조치할 사항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위와 같이 ‘예술가의 집’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의견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토록 유도, 독려하여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직원에 대하여 000000팀장 000을 ‘중징계’, XXXX팀장 △△△를 ‘경징계’ 하시기 바랍니다.